



충북대학교병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2026년도 제1차 충북대학교병원 신규직원 블라인드 채용 공고

「인류 건강과 의학 발전을 선도하는 미래 의료의 새로운 중심」 충북대학교병원과 함께할 역량 있는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01월 06일

충북대학교병원장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직종	모집분야	선발 예정 인원	응시자격
간호직	A.진료지원전담간호사(외과)	1	-진료부문 진료지원전담간호사 업무 수행 가능자 -[필수]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필수] 교대 또는 당직 근무 가능자 -[필수] 임상경력 총 3년이상(서류증빙필수) *임상경력 인정병원 기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가목에 따른 병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중 군병원
의료기술직	B.방사선사(핵의학과)*	2	-[필수]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또는 2026년도 방사선사 면허 취득예정자(2026년도 2월 졸업예정자) ※2026년 방사선사 면허 미취득시 임용 취소 -[우대] 핵의학과 근무 유경험자 -[우대]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소지자
임상심리직	C.심리치료사(신경과)	1	-[필수] 다음 자격증 중 1개이상 자격증 소지자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증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우대] 1년이상 신경과 근무 경력자
원무직	D.조리원	3	-환자식 조리 및 배식 등 조리 업무 종사 가능자 -[우대] 조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조리 업무 경력자
환경관리직	E.미화원	1	-건물 내·외부 환경관리, 탈의실 및 화장실 등 미화 업무 수행 가능자

- 공통자격: 본원 인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없고, 만 60세 이하인 자
- 직종별 필수/우대자격 및 근무조건, 업무 관련 상세내용은 공고문 및 직무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직종별 필수 응시자격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반드시 보유한 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병원 업무 특성상 근무지 변경(전보) 및 전직을 할 수 있으며, 교대·당직근무와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2

전형절차

구 분		분야별 전형방법				필기 과락 여부	비 고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전형	(3차) 인성검사	(최종) 면접전형		
간호직	A.진료지원전담간호사(외과)	●	-	●	●(100%)		
의료기술직	B.방사선사(핵의학과)*	●	●(50%)	●	●(50%)	○	
임상심리직	C.심리치료사(신경과)	●	-	●	●(100%)		
원무직	D.조리원	●	-	●	●(100%)		
환경관리직	E.미화원	●	-	-	●(100%)		

3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6. 01. 06.(화) ~ 2026. 01. 20.(화) 12:00 **★마감일자 및 시간 유의**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https://cbnuh.recruiter.co.kr>)
- 기재사항
 - 1) [(공통)필수 제출] 필수 응시자격 면허(자격)증 응시원서 해당란에 기재 **★필수자격 미기재시 다음전형 참여 불가**
(※면허(자격)증 제출시 검색 후 자격(등록)번호, 취득일 등 기재)
 - 1-1) [진료지원 전담간호사] 지원자 필수제출 : 임상경력 증빙서류 응시원서 필수 첨부 **★필수경력증빙 미첨부시 다음전형 참여 불가**
 - 2) [선택 제출] 우대 응시자격 및 직무와 관련한 면허(자격)증 응시원서 해당란에 기재
(※면허(자격)증 제출시 검색 후 자격(등록)번호, 취득일 등 기재)
- 접수결과 발표 : 응시자 개별 안내

※ 모든 전형 종료 후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신규채용예정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4

필기시험

- 일시 및 장소 : 2026. 01. 24.(토) ★시험시간 및 장소 개별안내
- 필기시험 시행직종 및 시험과목

필기시험 시행직종		시험과목	비고
의료기술직	B.방사선사(핵의학과)*	◦ 1과목 : [방사선이론] 40문항(5지 선다형)	

- 합격자 발표 : 응시자 개별 안내
- 합격인원 :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을 시 응시자 전원 필기시험 응시.

5

인성검사

- 대상자 : 인성검사 참여대상자 개별 안내
[인성검사 시행분야: 간호직, 의료기술직, 임상심리직, 원무직]
※ 일반직·원무직에 한하여 실시
- 일시 및 장소 : 2026. 01. 28.(수) ~ 2026. 01. 30.(금) 12:00 ★마감일자 및 시간 유의
(※대상자에 한하여 SMS 및 이메일로 인성검사 링크 전송)
- 응시자 전원을 선발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일정은 추후 공지

6

면접전형

- 대상자 : 면접전형 참여대상자 개별 안내(※전분야 시행)
- 일시 및 장소 : 2026. 02. 05.(목) ~ 2026. 02. 06.(금), 본원에서 진행 예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 및 장소는 추후 공지

7

임용안내

- 합격자발표 : • 2026. 02. 13(금) 예정
- 최종합격자의 임용결정은 본원 규정 등에 따름.
- 임용대상자는 본원 정원 범위 내에서 정규직 및 운영지원직으로 임용됨.
※ 보수 및 초임호봉 확정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페이지 유의사항 참조
- 본원 사정에 따라 임용후보자의 입사시기가 다를 수 있으며 선순위자부터 순차적으로 임용.

8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 적용
- 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 만점의 3% 가점 적용
- 제 출 서 류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응시원서 해당란에 기재 및 제반서류 첨부
- 상기 가점 중복시 유리한 것으로 적용함.

•	본원은 블라인드 채용원칙을 준수하며 응시자는 자기소개서 및 증빙서류 등에 인적사항(출신학교, 출신지역, 생년월일, 신체조건, 가족관계 등)을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이를 어길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귀속됨.
•	지원자는 본인이 지원하는 모집분야의 채용직종과 응시자격(직무기술서), 전형절차, 전형별 일시, 우대사항,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주시기 바람.
•	병원의 업무 특성에 따라 필요시 근무지 변경(전보) 및 전직, 교대·당직근무와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정규직 및 운영지원직으로 임용되며, 초임호봉 확정은 정규직은 본원 「보수규정」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하며, 운영지원직은 본원 「운영지원직 등 근로자규정」에 따름. ■ 운영지원직(환경관리직, 시설관리직) 초임연봉 및 호봉 인정사항 - 2025년 기준 운영지원직 초임연봉은 1호봉 기준 약 3000만원 수준, 그 외 복지포인트·가족수당·시간외수당 등은 별도 - 운영지원직의 초임호봉확정 인정사항은 군복무경력(현역병 의무복무기간) 및 본원 동일직무 기간제 근무경력에 한함
•	응시원서에 본인의 경력을 미기재하는 경우 경력인정 불가할 수 있음.
•	서류전형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서를 지원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응시원서 작성 시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향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자가 단계별 전형에 불참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함.
•	본 채용일정은 본원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험 실시 3일전에 본원 홈페이지에 공고함.
•	선발과정에서 응시인원이 미달되거나, 적임자가 없을 시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게 또는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	본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60조의 4 제7항 규정에 따른 사학연금 적용 대상기관으로 정규직 임용 후 사학연금에 가입됨(본원 규정 등에 따라 적용).
•	신규임용예정자의 자격미달, 채용비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임용포기 등에 따른 결원 보충을 위해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예비합격자를 결정하여 운영함.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음.(방문접수에 한함)
•	최종합격자 발표일 180일 후 응시원서 파기 함.
•	채용불합격자는 발표일 기준 14일 이내 본원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응시자격조회 및 신원확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	부정행위자는 본원 직원채용및전직시험시행세칙에 의거 향후 5년간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원 규정에 의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총무과(043-269-6316)로 문의 바람.
•	충북대학교병원 입사지원서 또는 직무기술서 양식은 무단으로 복사 및 배포 등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임용결격사유 [인사규정 제24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자로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채용비위로 인한 부정합격자 또는 채용 관련 비위,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5.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직원채용및전직시험시행세칙 제20조]

임용시험에 있어 응시원서 제출시 허위사실을 기재, 제출하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부정행위자가 병원 직원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한다.

초임호봉획정 기준 [보수규정 제16조 및 제17조]

구 분	경 력	환 산 율
갑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고용직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군복무경력. 단,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3. 당해직무와 직접 관련된 직종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 4. 동일직종 및 직무로 법인화 이후 본원 근무경력.	100%
을	1.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면허소지자가 종합병원 및 의료법인인 병, 의원에서 정규직으로 각각 당해 업무에 근무한 경력 2.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면허소지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 3. 본 병원 일용직(법인전 임용자) 및 충북대학교 기성회직으로 근무한 경력 4. '갑' 4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화 이후 본원 근무경력.	80%
병	1.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면허소지자가 종합병원(단, 500병상 이상의 국·공립병원, 대학병원, 지방공사병원)에서 비정규직으로 각각 당해 업무에 근무한 경력. 2. 당해직무와 직접 관련된 직종으로 종합병원(단, 500병상 이상의 국·공립병원, 대학병원, 지방공사병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 3. 당해직무와 직접 관련된 직종으로 법인체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단, 법인체 경력은 기술직에 한함.)	6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1.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4.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